

#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지 편집위원회 규정

제정 2001년 9월 1일

개정 2005년 3월 15일

개정 2015년 1월 19일

1. **(기능)** 편집위원회는 농업생명과학연구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다룬다. 투고규정과 심사 규정 및 편집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2. **(구성)**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  - 1) 편집위원장 1명
  - 2) 편집간사 1명
  - 3) 편집위원 약간명
3. **(위원의 임무, 임명, 임기)**
  - 1) 편집위원장(Edirot in chief)은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및 외부인사들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.
  - 2) 편집위원회 간사는 원장이 따로 정하며,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부원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. 간사는 편집위원장과 연구지 편집과 발간의 실무를 책임진다. 편집위원은 책임연구원 및 외부인사들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.
  - 3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- 4) 편집위원장은 농업생명과학연구지 편집위원회를 대표한다.
  - 5) 농업생명과학연구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원장은 국내외 석학들을 편집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  - 6) 위원회는 논문투고규정과 논문작성요령을 정하여 회원에게 공지한다.
  - 7) 투고된 논문은 별도의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.
  - 8)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.
  - 9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